



# International Alert

January 2011

By Hoon Kim (201.585.7200 or [hoonkim@ckpcpas.com](mailto:hoonkim@ckpcpas.com))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Executive Summary 이므로 중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미국세청(IRS) 대규모 이전가격 조사 준비하고 있어

최근 Bloomberg News는 미국내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하여 연간 \$60 billion에 달하는 탈세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였고 IRS는 정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대규모 이전가격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1. 지난 8월10일 하원에서는 11억불에 이르는 국제조세 증세 법안을 승인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줄이고 이전가격 등 조세조작을 집중 감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1일자로 IRS는 국제기업을 담당하던 LMSB부서를 LB&I(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부서로 조직을 개편하고 빠른 시일내 국제조세조사관 875명을 증원해 총 1,500명 수준(현행 약 600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였다.
2. 국제조세조사관들과 이전가격전문 경제학자를 포함한 이전가격조사팀을 구성하고 모자라는 경제학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기존 80명에서 50%를 늘려 총 120명이 포진하게 된다.
3. 이전가격조사에 이은 탈루세액 추정시 이중과세에 대한 조세협약국의 반발에 대비하여 해당국과 "이전가격 합동조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30/2010에 시작되었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전가격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국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유사하긴 하지만 매우 복잡한 사전가격협의(APA) 절차보다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43개 외국정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법개정까지 마무리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1월3일 한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43개 (39개국과는 2010년도중 체결)에 이르며 향후 3-4년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협정체결로 역외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 탈세거래를 추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특히 미국의 FBAR와 같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11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국세청의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내법적 행정적 수단이 마련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조사 강도 높여

지난해 스위스 은행 UBS가 IRS에 4,450명의 미국납세자 고객명단을 넘겨주고 벌금 780백만불을 내는 수모를 겪었고 지난 12월에는 독일 은행 Deutsche Bank가 IRS에 벌금 554백만불을 내기로 합의 하였다. 이는 미국납세자의 불법 도피자금임을 알면서 탈세를 유도한 것에 대한 벌금인데 현재 홍콩은행 HSBC를 조사 중에 있고 중동과 아시아권 은행들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RS는 18,000명이 자진해서 신고한 지난 2009년 외국은행예치금보고(FBAR) 특별신고와 같은 기회를 2011년중 한번 더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다만 자신 신고를 하더라도 2009년보다는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추후 적발된 미신고자에 대한 민형사법 적용을 한층 엄중히 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 외국인 비거주자의 미국내 자금 흐름과 이자소득 보고 및 공개 방침 바뀌

외국자본의 미국내 유치 목적으로 외국인 비거주자가 미국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IRS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2002년 개정세법을 철회하였다(January 7, 2011) 따라서 올해부터는 어떠한 국가의 납세자가 이자를 받아 갔는지 IRS에 보고가 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외국인의 거주국가에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내 외국인 자금 이동과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한 비밀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되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미국납세자가 은행에 외국발행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신분을 조작하여 탈세하는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불확실한 조세위험(Uncertain Tax Position:이하 UTP)에 대한 기준일 확정

지난 Alert에서 언급한 UTP 내용을 IRS에 세금보고서와 같이 보고(자진신고)해야 하는 기준일이 변경되었다. 당초 규정은 December 15, 2009 이후 끝나는 세무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2010년 뿐 아니라 2009년도까지 포함 되었는데 지난 12월3일 IRS는 기준년도를 January 1, 2010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009년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고 의무 대상은 2010년 말 현재 미국 납세자로서 재무제표 감사(Audit)를 받는 기업 중 총자산 \$100 M (1억불)이상인 기업 (2012년부터 \$50M, 2014년부터 \$10M로 하향조정)으로 UTP 조정위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과 복수주세(Multi-state tax 혹은 "Nexus") 분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당국의 조사를 전제하여 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50%이상 된다고 판단되면 예상 추정금, 벌금과 이자를 포함 우발채무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FIN 48) 별도로 IRS에 보고해야 한다.

### Wal-Mart의 이전가격 사전협의(APA) 성공스토리로 본 다국적기업의 내일

2007년1월 자본주의 국가(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중국)과의 첫번째 Bilateral APA를 이끌어내는 신화를 썼던 Wal-Mart는 현재 8개 국가와 Bilateral APA 그리고 4개 국가와 Unilateral APA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Wal-Mart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와 APA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PA를 이끌어 내는데는 시간과 금전의 많은 투자가 따르지만 다국적기업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직면하는 불확실한 조세위험의 규모와 비교해 볼때 APA만큼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는 없으며 다국적기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한다.

### 한국 상장사, 2011년부터 IFRS 의무 적용, 2010년 재무제표가 비교 전년도로 IFRS 최초 적용해야

드디어 한국에서 IFRS 적용이 개시되었다. 2011년이 적용 첫해지만 비교표시를 위한 2010년 재무제표가 그 최초 적용 년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상장사의 미국 현지법인 등 해외 자회사들도 2010년말 결산 재무제표부터 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최근에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IFRS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보고자 은밀하게 로비활동을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로비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감위나 회계기준원을 통해 예외 또는 유예규정이 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핵심사항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첫째는 부실한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연결 시 재무구조의 악화문제와 두 번째로는 장기 도급공사의 진행기준 에서 완성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수익 인식의 연기 문제이다. 물론 두 가지 다 엄청난 회계상 부담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왔고 따라서 곧 마감해야 할 2011년 말 결산에 과연 어떻게 이를 적용할 지가 한국에서는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 마킬라도라 한국기업

### 세무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에 따른 고려사항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요구되었던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와 사회보장세 감사보고서(Dictamen IMSS)가 2010년6월 대통령령으로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킬라도라 기업이 종전과 같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목적 감사보고서(Dictamen)는 세무당국의 조사시 상당한 완충역할을 할 뿐아니라 IVA tax 등 세금환급신청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Dictamen을 받는데 드는 시간, 인력, 비용부담 등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ictamen 제출의무는 폐지되었어도 종전 기일(Fiscal: 7월31일/IMSS:9월30일)내 새로 재정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보고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 수입원을 잃은 멕시코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작성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부터는 디지털 인보이스 사용 의무화

이미 예고(2009년12월7일자 세법개정)된 세무당국(SAT)에서 관장하는 디지털 인보이스를 2011년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자결제 방식은 SAT의 디지털 스탬프를 받아 종결된다. 기 인쇄된 인보이스는 해당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00페소 미만의 거래는 종전처럼 인쇄된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SAT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매분기 사용내역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마킬라 규정(Decree) 일부 변경(2010년12월24일)

임시수입된 원자재를 비롯한 일부 물품의 멕시코내 보유기간이 변경 또는 단축 되었다. 종류에 따라 3개월, 9개월, 12개월로 변경된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011 멕시코세법 개정 (2010년10월19일)

2011년 세법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마킬라도라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였다.

경제지표: 2011년 예상 GDP 성장율: 3.8% (2010년 4.5%)


2011년 예상 US dollar 대비 평균환율: 12.90

사회보장세 자진납부: 채납된 사회보장세(IMSS)를 3월이전에 납부하면 100%벌과금을 면제하고 4월부터 6월말전에 납부하면 90%-50%까지 차등으로 면제한다.

텍스크레딧 사용제한: 결손금등 텍스크레딧은 일반법인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10년동안 최저한세(IETU)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CKP News**

저희 CKP가 아래와 같이 로고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2월7일자로 동부 Fort Lee, NJ에 7번째 사무실을 개설하고 National firm으로가는 첫발을 내디디었습니다.

(201) 585-7200

CKP는 자체적 또는 RSM McGladrey와 연합하여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수십건의 이전가격 분석, IRS와 이전가격 사전협의(APA) 협상, IRS 이전가격조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KP는 다수의 한국회계사를 비롯 국제회계기준(IFRS) 분야에도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